

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7일
납부 의무자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전화번호		
대상물건지 내용					
구 분	소 재 지				
[] 휴경·폐경지					
[] 3년 이상 빈 축사					
[] 3년 이상 휴양식장					

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(휴경·폐경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·면장·동장의 확인서 (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직원 확인사항	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(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신 청 안 내	
제 출 처	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
유의사항	• 빈 축사와 휴양식장은 건축물로 등재된 건만 해당됩니다. • 해당 주소·지번(地番)·용도를 정확히 적기 바랍니다. • 납부 의무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성명, 생년월일 등으로 적습니다. • 3년 이상 방치된 축사·양식장의 증명은 읍장·면장·동장의 확인으로 인정합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